

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신규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24조(반려 및 조사의뢰 등) ① 증명서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인이 제26조에 따른 발급신청을 <u>고의 또는 허위로</u> 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범칙조사 의뢰를 할 수 있다. <u><단서신설></u></p>	<p>제24조(반려 및 조사의뢰 등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</u></p> <p>② ----- ----- <u>속임수 또는 부정</u> <u>한 방법으로</u>----- -----.</p> <p><u>이 경우 세관 이외의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범칙조사의뢰를 요청한다.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 반려사유 정비 • 법령용어 정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적절 용어 정정 * 규칙 §9⑥상 용어 사용 • 상공회의소 등 범칙조사 의뢰 절차 마련
<p>제26조(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) ① ~ ③ (생략)</p>	<p>제26조(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	

④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규칙 제10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수출물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제5항에 따른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: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

3. 법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

④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규칙 제10조 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또는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수출물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 규칙 별지 제6호서식

3. <삭제>

- 신규 발급신청 간소화
- 인증수출자 생산물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소명서와 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제출 생략*

* 증명서발급기관에서 전산으로 확인 가능

- 어문 정비(띄어쓰기)

- 제4항 본문에 규정

인 경우: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

⑤ ~ ⑥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⑤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규칙 제1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따라 ‘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’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보세구역 반입신고서
2. 자유무역지역 외국물품 반입신고서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

⑧ 규칙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서 ‘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’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수입한 물품과 수출하는 물품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서류 : 해당 수입물품의 국제운송서류 사본 등 입증서류
2.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: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물품의 수

- 연결 C/O 발급 시 제출 서류
 - 수입·수출 물품 간 동일성 확인하는 경우

- 연결 C/O 발급 시 제출 서류
 - 수입·수출 물품 간 동일성 확인하는 경우
 - 수입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

입자와 수출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양수도계약서 등 입증서류

3.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: 협정 제2장 제2.6조(관세 차별)에 따른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원산지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된 해당 물품의 자재명세서, 제조 공정도, 원재료구입명세서 등 입증서류

- 관세차별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경우

제29조(현지확인) ① ~ ② (생략)

③ 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 연기 신청서를 받은 세관장은 규칙 제10조제6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 준수 가능성 및 연기 사유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결정된 현지확인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<신 설>

제29조(현지확인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심사하여 연기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현지확인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

• 행정조사기본법상 업무절차 정비
- 현지확인 연기신청 시 3일 이내 결과통지

• 행정조사기본법상

제34조(원산지증명서 재발급) ① 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

1.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
2. 재발급 신청 사유서
3. 인도와의 협정 제4.4.조제2항의 원산지증명서 제4부분(인도와의 협정으로 한정한다)

② ~ ④ (생략)

제35조(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) ① 제3

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11조, 제17조, 제18조, 제21조, 제22조를 따른다.

제34조(원산지증명서 재발급) ① -----
 -----제9항-----
 -----규칙 별지 제3호
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(재발급·정정
발급)신청서를-----
 -----. 단
만, 인도와의 협정에 한하여 협정 제4.4.
조제2항의 원산지증명서 제4부분을 합
께 제출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35조(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) ① ---

준용규정* 신설

* 현장조사, 사전통지, 연기신청, 의견제출, 조사원 교체신청 등

- 조문 정비
 - 제8항(서류보완) → 제9항(재발급·정정발급)
- 재발급 신청 간소화
 - 사유서 제출 생략

• 정정발급 신청 간소화

3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필증의 정정,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, 수량, 품목번호 등의 착오, 누락,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<단서신설>

1.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
2. 원산지증명서 원본. 다만, 정정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정정신청 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.

----- . 다만,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규칙 제10조제1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로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자가 그 정정발급을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-----
-----발급(재발급·정정발급)-----
2. ----- 또는 사본.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정정발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.

- 원산지증명서 원본
제출 생략

- 규칙 개정사항 반영
※ 서식 명칭 변경

3. 정정발급 신청 사유서

4.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② ~ ③ (생략)

④ 규칙 제10조제11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이미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급일자는 본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 한다.

1. ~ 5. (생략)

제37조(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 방식 처리) ① 관세청장은 규칙 제10조제10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를 지정 정보통신망에 공고한다.

제50조(신청서류의 반려)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.

3. 정정사유를 입증하는 서류

<삭 제>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발급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37조(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 방식 처리) ① -----
--제11항-----

-----.

제50조(신청서류의 반려) -----

-----.

- 사유서 제출 생략
- 법령용어 정비
- * 규칙 §10②호상 용어 사용

- 법령용어 정비
- 재발급 경우와 혼동 방지

- 조문 정비
- 제10항(재발급·정정발급 관련)
- 제11항(전자문서방식 관련)

- 원산지 사전심사
반려사유 정비

1. ~ 6. (생략)

<신설>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

부칙

<관세청고시 제2024-00호(2024.4.00.)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4월 0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 시 서류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현행	개정안	비고
----	-----	----

[별표 2의2] 원산지간이 확인물품

연번	HS	HSK 품명	품명설명	활용대상 협정	국내 필수 공정	비고
294	8481.80-2000	랩 · 코크 와 트랩	배관에 설치되어 유로의 개폐나 유량을 조절하는 장치	한-중 FTA, RCEP, 한-이스라엘 FTA, 한-캄보디아 FTA, 한-인도네시아 CEPA	플라스틱 사출 또는 비금속재 등을 통해 생산	완제품이나 합성수지 수반제품을 받아 생산할 경우 제외

<신규 추가>

[별표 2의2] 원산지간이 확인물품

연번	HS	HSK 품명	품명설명	활용대상 협정	국내 필수 공정	비고
294	8481.80-2000	랩 · 코크 와 트랩	배관에 설치되어 유로를 여닫거나 유량을 조절하는 장치	한-중 FTA, RCEP, 한-이스라엘 FTA, 한-캄보디아 FTA, 한-인도네시아 CEPA	플라스틱 사출 또는 비금속재 등을 통해 생산	완제품이나 합성수지 수반제품을 받아 생산할 경우 제외

연번	HS	HSK 품명	품명설명	활용대상 협정	국내 필수 공정	비고
318	2206.00-2010	청주	찰과 찰 누룩 등을 원료로 거른 발효 및 숙성하여 만든 청주 <제외대상> - 건용량의 0.5% 이하로 알코올을 함유한 것	한-아제안 FTA, 한-중국 FTA, 한-베트남 FTA, RCEP, 한-이스라엘 FTA, 한-캄보디아 FTA, 한-인도네시아 CEPA	누룩으로 곡물을 당화, 발효시켜 탁주를 담근 후 침전시켜 거른 후 재성·살균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	곡물의 당화, 공정 필요
319	2206.00-2030	탁주	정제수, 쌀, 국, 산도조절제, 효모를 원료로 하여 담금, 공정과 발효 및 재성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막걸리 <제외대상> - 건용량의 0.5% 이하로 알코올을 함유한 것	한-아제안 FTA, 한-중국 FTA, 한-베트남 FTA, RCEP, 한-이스라엘 FTA, 한-캄보디아 FTA, 한-인도네시아 CEPA	곡물 등 전분질 원료에 누룩, 효모 등을 첨가해 발효시켜 생산	곡물의 당화, 공정 필요
320	2209.00-1000	양조 식초	분말과 증숙액 등을 혼합·발효하여 얻어진 양조식초 - 알코올의 용량은 설치 20도에서의 알코올 용량에 해당하는 것	한-아제안 FTA, 한-베트남 FTA, RCEP, 한-이스라엘 FTA, 한-캄보디아 FTA, 한-인도네시아 CEPA	맥아액기스 등의 원료를 투입해 가당(당화)·알코올발효·여과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	CC(2년 위 변경) 경우 투입 원지하수나 수돗물은 국내에서 채수(取水)할 수 있는 자료 필요
321	2523.21-0000	벽색 시멘트 (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 것에 상관없다)	석회석, 납석 및 규석을 조제한 후 혼합·소성한 벽색(White) 시멘트	한-아제안 FTA, 한-중국 FTA, 한-베트남 FTA, RCEP, 한-캄보디아 FTA, 한-인도네시아 CEPA	석회석 등의 원료를 분쇄·소성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	소성(firing) 공정 필요

- 법령용어 정비
 - 한자어를 고유어로 순화
 - * 개폐나 → 여닫거나

- 신규 발굴 및 지정
 - (9개품목)

322	5407.20-0000	스트립(strip)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	폴리프로필렌 스트립(strip)으로 직조한 생지직물. <제외대상>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(strip)이나 이와 유사한 것	한-아세안 FTA, 한-베트남 FTA, RCEP, 한-이스라엘 FTA, 한-캄보디아 FTA, 한-인도네시아 CEPA	폴리프로필렌 수지를 방사·연신하여 실을 만들거나, 폴리프로필렌 스트립 또는 쉬트상위 를 직조한 것을 절단하여 실을 만든 후 직조(waving)하여 생산	직조 공정 필수
323	5801.32-0000	인조섬유로 만든 코르도루이(corduroy)	비스코스 나 레이온 섬유계의 절단된 코르도루이(corduroy) 직물 - 부사를 절단하지 않아 직립한 파일(pile)을 가지지 않은 것을 포함함	한-아세안 FTA, 한-베트남 FTA, RCEP, 한-이스라엘 FTA, 한-캄보디아 FTA, 한-인도네시아 CEPA	필라멘트사를 사용하여 코듀로이 조직으로 직조한 다음, 염색·후가공(음형성 등)을 거쳐 생산	제직 및 염색된 제품에 후가공 처리와 같은 단계를 거쳐 생산만 하는 경우 적용 제외
324	5911.40-0000	확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(인모제의 것을 포함한다)	시멘트나 철강공장에서 나오는 먼지 등을 걸러내기 위하여 여과(필터링)하는 데 사용하는 필터용 원단 <제외대상> 제11부 B호 나무에 따른 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제종 특성(종업류)을 지닌 것	한-아세안 FTA, 한-베트남 FTA, RCEP, 한-이스라엘 FTA, 한-캄보디아 FTA, 한-인도네시아 CEPA	필라멘트 원사를 이용해 직조(waving)하여 여과포를 만들고 열처리·절단·봉제 등을 거쳐 생산	직조 공정 필수
325	6109.90-3010	인조섬유 티셔츠	인조섬유제 편물로 만든 티셔츠 <제외대상> - 단추나 그 밖의 이음장치와 깃(collar)이 들어간 것 - 의류 끝 부분에 조임끈(drawstring)·풀이진 의류 - 제6105호의 남성용 티셔츠·제6106호의 여성용 브라우스	한-중국 FTA, 한-베트남 FTA, RCEP, 한-캄보디아 FTA, 한-인도네시아 CEPA	폴리에스터 원단(제54류)을 가공·재단·나열·봉제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	재단(cutting)·봉제(sewing) 공정 필수
326	6307.90-4020	방직용 섬유로 만든 얼굴 마스크	방직용 섬유로 만든 얼굴 마스크 - 방직용 섬유 제품 정의는 제11부 주7의 제품으로 된 것(rounde	한-중국 FTA, 한-베트남 FTA, RCEP, 한-캄보디아 FTA, 한-인도네시아 CEPA	부직포(겉감, 안감, 필터) 재단·교편 삼입·윤착(재봉)·근 부착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	성형 및 조립된 제품에 후가공 처리와 같은 단계를 거쳐 생산